전국 종오리 일제검사 체계 개선 추진

전국 종오리 AI 일제검사 중 발생하는 폐사에 대해 적정한 피해보상책 마련과 더불어 검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병은)는 최근 농식품부에 종오리 AI 일제 검사에 따른 농가의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보상체계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종오리 AI 일제검사는 분기별(연 4회)로 항원 · 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AI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오리의 분변, 종란 또는 혈액을 채취하는 데, 육성 중인 종오리는 혈액을 채취해야 한다.

오리협회는 종오리 채혈에 따른 오리폐사에 대해 보상책 마련을 주문하고, 방법과 횟수 등 개선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은 회장은 "평균적으로 사육동별로 20수씩 채혈을 하는데 지금까지 별도의 보상 없이 검사를 진행해왔다"며 "오리는 야행 특성상 채혈된 오리를 따돌림 한다. 이 때문에 채혈오리의 경우 많이 죽는다. 또 소규모 농가에게 사육동당 20수는 상당한 타격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기별 일제 검사 역시 잦은 축사출입으로 인해 오히려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검사횟수를 줄여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오리 채혈에 따른 오리폐사 등 문제점을 인식하고 실사 등을 거쳐 내년부터 검사체계 개선, 폐사 종오리 보상 등 제도마련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AI가 잇따라 발생, 지난달 13일부터 23일까지 전국 89개 종오리 농장을 대상으로 AI 항원 · 항체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든 종오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2015. 10. 30]

가금산물 산지가격 조사체계 어떻게 바뀌나

육계, 계란, 오리, 토종닭은 소, 돼지와는 달리 각 협회가 시세를 조사해 발표해왔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가금산물 산지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육계, 계란, 오리, 토종닭은 실거래자료를 수집 발표하는 산지가격 조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키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가금산물 산지 가격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기존의 조사체계와 무엇이 다른지 살펴봤다.

'가금산물 산지가격 조사체계 구축 사업'은 기존의 조사원을 기반으로 확충해 실제적이며 객관적인 자료 조사를 통한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가금산물 산지가격이 합리적인 기준가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농가 거래가격에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것.

가격 수집시 임의적으로 제외되거나, 기대가격이 아닌 실제 거래상황에 대한 정보만 수집해 신뢰도 높은 기준가격을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2월부터 가금산물 가격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생산자, 관련기관 등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생산자단체, 농협,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 가격조사 체제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며, 산지가격 조사기관으로 공공기관인 축평원으로 선정했다. 축종별, 유통형태별 조사대상과 대표가격을 산출하는 산식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했다.

가금산물 산지가격 조사체계 구축사업의 목적은 가격조사 대상 표본 확대와 객관적인 가격조사를 통한 통계적 분석, 실 거래가격 발표 등으로 가금산물 산지가격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 현황

육계의 경우 전체 생산농가는 계약사육하고 있으며, 생축의 거래는 계열업체와 유사인티(유통업체)가 기업간 거래 형태로 이뤄진다. 생산농가 사육계약은 현재 계열화 업체 93%, 유사인티 7%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육계 가격의 경우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농협중앙회 등 3곳에서 발표하고 있다. 양계협회는 계열업체를 제외한 유사인티(유통업체) 10개소에서 대, 중, 소 규격으로 조사하고 D/C 가격을 포함해 매일 오전 9~10시 사이 거래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육계협회는 계열업체 5개소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대, 중, 소 규격으로 생산비와 운반비를 포함해 kg당 가격을 매일 오전 9~10시에 발표한다.

농협중앙회는 양계농협 포함 15개 지역을 조사해 kg당 평균가격으로 발표하고 있다. 지역, 도별, 전국평균을 내고 있다.

토종닭은 계열과 유사인티의 거래로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생산농가에서는 직접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도별 시세조사원이 농가, 유통상, 계열업체에서 전일 가격에 시장상황을 고려해 kg당 가격을 조사하고 있다.

오리의 경우 계열물량에 의해 수급이 조절되고 있으나, 일부 유사인티와 생산농가간 직접거래가 있다. 오리협회는 계열업체 15개소에서 도체 거래 가격에 도압수수료를 고려해 도체 2.0kg 단위로 매주 1~2회 조사하고 있다.

계란은 생산물량의 약 40%가 집하장(GP센터)를 경유되며, 60%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체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양계협회는 도별 5농가 내외로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의 D/C가격을 포함해 왕, 특, 대, 중, 소란으로 주 2회 조사한다. 농협중앙회는 양계농협을 포함한 15개 지역에서 특란, 10개 기준으로 지역당 3농가 이상, 매일 17시에 거래가격을 조사한다.

〉〉 추진방향

이 사업은 육계, 토종닭, 오리, 계란 등 가금산물 생산자와 판매자가 시장 거래상황을 조사한 후 발표하는 것이다. 각 조사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춰 조사원 선정, 조사결과 집계, 분석 등 조사가 용이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가격조사 수집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일정기간동안의 조사결과를 취합 분석해 조사체계를 반영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 사례조사를 검토하고 품목별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해 운영방안을 수정 보안해 나갈 예정이다.

◆ 육계 · 토종닭

육계와 토종닭의 산지 가격 수집은 실거래 가격과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통계량 기준으로 허용범위 초과값은 제외한다.

평균가격은 가격과 물량을 곱한 가중평균으로 한

다. 조사시점은 거래시간과 도계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1안의 경우 0시부터 24시, 2안의 경우 전일 17시부터 17시안으로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
발표시점은 매일 발표하되, 익일 오전 12시 안과 오전 10시 안을 검토하게 된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일 거래를 동시 입력할 경우, 가중평균 산출 시에 중복 반영을 제거하고 평균가격 산출 방안에 중점을 뒀다.
시장 주도가격과 표준가격 설정을 위한 도계육 거래가격조사도 동시에 추진한다. 계열업체 도계육 판매가격 조사와 공표를 매일 한다. 도계 제경비와 도계육 판매가격을 생체가격 환산방법으로 조사한다. 토종닭에 대한 계열업체 구매와 농가 출하 형태를 점검해 조사접점 확대를 추진한다. 육계와 토종닭 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해 조사방법 등을 점검한다.

◆ 오리

오리는 실거래 가격과 물량을 조사한다. 생오리 실제 거래기준과 신선육 거래기준을 환산하는 안 두 가지를 검토한다. 시세 기준으로 덤핑 등으로 임의 제외됐던 기존 조사체계에서 통계량 기준으로 허용범위 초과값은 제외한다. 평균값은 가격과 물량을 곱한 가중평균값을 조사한다. 매일 조사하며 주 1회 발표한다.
신선육 가격에서 생오리 가격을 환산하는 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도압 제경비를 조사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열업체 도압육 판매가격도 함께 조사한다.
생오리 거래 시 기준가격과 가격 시점과 지역별 기준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범조사 시 지역별 차이 발생에 따른 오차를 줄이는 보완 방안도 검토한다.
실제 거래 발생빈도가 낮음에 따라 시범조사 기간 중 1주 단위 조사원별 발생빈도 등 시장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 계란

계란은 실거래 가격과 물량으로 매일 수집한다. 통계량 기준으로 허용범위 초과값은 제외한다. 가격과 물량을 곱한 가중평균을 하며, 10개와 30개 가격 두 개를 조사하거나 30개 가격만 조사하는 안이 검토된다. 익일 오전 12시와 오전 10시 발표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매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계란 유통의 특이성을 감안해 양계협회, 양계농협, 일반 조합의 기존 조사원을 포함해 인력을 더 충원해 추진할 예정이다. 산지가격 조사에 산란계 농가(식용란 수집판매업)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
계란 거래 형태와 유형에 따른 거래 가격 차이점을 분석해 표준가격을 산출하겠다는 것. 생산농가에서 GP센터, 유통업체(식용란수집판매업) 출하에 따른 비용을 조사해 계란가격에 반영도 검토하고 있다.

■ '가격' 용어정의

- **거래가격** : 시장에서 거래당사자간에 거래한 가격. 거래 대상품목의 수량, 품질, 형태, 결재방식 등 다양한 거래유형에 따라 가격이 형성(일반 실거래, 수급반영)
- **기준가격** : 거래당사자가 당해 거래의 기준이 되는 가격(시세)으로 과거 거래가격을 가중평균 또는 산술평균 등을 통해 산출한 가격
- **고시가격** : 정부가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재화

나 용역의 대가에 대한 최고가격을 정하여 공시한 가격(기대가격)

- **표준가격** : 각 품목별 생산원가 및 이윤이 감안된 거래의 기초가 되는 가격(수급 미반영)
- **주도가격** : 생산-유통(도매)-소비 단계의 가격이 상호 연동하는데 있어 가장 영향력이 큰 단계의 가격(육계 · 토종닭 · 생산자 가격, 오리-도매가격)

▶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2015. 10. 30]

전남 오리농가 올인-올아웃 시스템 가동

전남 소재 모든 육용오리 농가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올인-올아웃 시스템이 적용되는 등 올 겨울 고병원성AI 발생을 막기 위한 총력 차단방역 태세가 가동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병원성AI 발생현황과 방역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국장은 11일 현재 지난 9월 14일 최초 발생 이후 총 14건 양성이 나왔고, 이 14건 모두는 기존과 달리 농가 신고가 아닌 출하전 검사 또는 역학관련 검사과정에서 선제적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겨울철새 도래 등 여건을 감안했을 때 고병원성AI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농가 등 관련 종사자들에게 철저한 차단방역을 주문했다.

아울러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야생철새의 경우 국외에서 서식하던 12마리 중 1마리가 지난달 10월 15일 양구, 16일 안성으로 이동했고, 나머지 개체는 남하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병원성AI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방역태세를 강화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오는 11월 11일까지 전남 · 광주지역 육용오리 농가(593호)에 대해 AI 일제검사를 진행하고, 11월 6일까지는 전통시장 · 계류장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농협 공동방제단 89개반을 동원해 일제소독을 실시키로 했다.

이 국장은 특히 내년 2월 29일까지는 전남 소재 모든 육용오리 농가들에 대해 일제 입식 · 출하(올인-올아웃)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발생 농가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되고, 계열사 방역책임 등 위반시에는 12월 23일부터 과태료(1천만원 이하)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2015. 11. 06]

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기준 마련된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동물복지 오리농장의 인증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홍성구)은 지난 11월 3일 대회의실에서 농장동물복지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등 정책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했으며 내년 시행 예정인 '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에 앞서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육밀도, 조명환경, 급수 공간 등을 주요 쟁점 사항으로 다뤘다.

동물복지를 고려한 오리의 사육 밀도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단위 면적(㎡)당 육용오리 체중 기준으로 17kg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육용오리 마리당 사육면적 0.36㎡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 사육 기준을 일반 축사의 경우 육용오리는 마리당 0.246㎡, 유기축산에서는 0.3㎡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조명은 영국의 경우 어두운 환경에서 오리가 예민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명을 제공하도록 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야간에 최소한 조명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립축산과학원 최동윤 축산환경과장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동물복지 오리농장의 인증 기준을 마련해 축산 분야의 동물복지 적용과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 기준(안)'은 추가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수정을 거쳐 행정예고 후 내년에 고시로 시행할 예정이다.

▶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15. 11. 06]

전남도의회 AI 살처분 보상기준 강화 건의, 축산농가 '반발'

전라남도의회와 전라남도의 설익은 축산정책이 농가를 고사시키려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사)한국오리협회 전남지회와 (사)대한양계협회 전남지회 등 전남지역 6개 축산단체는 11월 9일, 전남도의회가 정부에 건의한 'AI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강화 입법 촉구'에 대해 '축산 농가를 문닫게 하려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전남도의회 김효남 위원장을 항의 방문한 축산단체장들은 "축산 계열사와 농가의 갑을관계 현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내놓은 건의문"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또 "전남도의회가 건의한 내용은 정부의 기준보다 강화된 것"이라며 "축산업을 그만 둬야 할 중대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농민들은 "(농가입장 반영 없이 만들어진)현재의 계약 시스템에서는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도 계열사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농민들만 빚이 늘어나게 돼 있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가 바이러스를 만들고 우리가 가져온 것도 아니다. 농민들은 내 농장을 지키기 위해 최

선을 다 하고 있다"며 "AI청정지역을 위한다면 바이러스가 어디서 오는지부터 정부가 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농민들의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역이 뚫려 AI가 감염되면 정부에서는 역학조사를 할 때부터 농가를 죄인으로 만든다"고 말하고 "하지만 왜 감염이 됐는지, 단 한 번도 역학조사 결과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방역 당국의 무책임하고 무능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김효남 농수산위원장과 전라남도 권두석 축산과장은 "성급한 결정이었던 것 같다"며 "너무 하나만 보았다"고 말하고, 이후 축산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해명 과정에서의 적절치 못한 발언이 농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김효남 위원장은 "지급되는 보상금이 감액되면 농가 사육비도 같이 감액된다는 것 알고 있다. 오리농가에게 누가 몽둥이를 맞느냐는 농담도 했다"며, 논의 과정에서 농가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인했다.

또 "내가 위원장이다 보니까 이름을 올린 것"이라는 책임회피성 해명과 "대기업은 이길 수 없다. 이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도 로비하고 다 한다. 도에서도 그렇고 농가도 이길 수 없다"며 학인 되지 않은 해명을 내놓아 빈축을 샀다.

전남도 권두석 축산과장 역시, 건의문을 발의 · 채택한 김 위원장과 농민들 앞에서 "(도의회)건의안은 큰 의미가 없다"는 말을 되풀이, 도민 대의기관의 의정활동 자체를 '의미 없는 일'로 폄훼했다.

한편, 이날 항의방문에 나선 축산단체장 등 20명의 농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에게 보내는 사형선고이자 질병 발생의 모든 원인을 농가에 전가하려는 무책임하고 어이없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전남도의회의 건의문 철회를 촉구하는 전남지역 6개 축산단체 공동 성명서를 전남도의회에 전달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0월 26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수산위원회 김효남 위원장(해남2, 새정연)이 대표발의한 'AI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강화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 청와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등에 건의했다.

이 건의문은 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책임있는 방역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산지 시세의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고, 2회 반복 발생 시 산지 시세의 30% 지급, 3회 이상 반복 발생 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하는 등 보상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는 입법과 함께 현재 국비 80%가 지원되고 있는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 [2015. 11. 10]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번이 마지막 기회

오는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끝내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합동으로 만든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 요령'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시 · 도별로 지자체 공무원, 생산자단체, 유관기

관 및 축산농가 순회교육을 이달부터 본격 실시키로 했다.

특히 농축산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만큼 오는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고, 축사시설자금이 필요할 경우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도록 생산자단체, 농협 등에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를 당부했다.

농축산부는 그동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13.5.31),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양육실을 신설하고, 지붕 및 벽 재질에 비닐 및 천막에서 합성 수지(일명 썬라이트) 및 합성강판 1/2 이하까지 확대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4.3.24)을 통해 가축사육 거리제한 3년 유예, 축사폐쇄 · 사용중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3~4년 유예하고 동 법 시행령도 개정('15.3.24), 육계 · 오리 축사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했다.

이외에도 한-호주, 한-캐나다간 FTA 체결에 따른 축산단체 요구사항인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방역(소독)시설에 대하여 건폐율 산정 시 제외했다. 또 불법축사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경감 근거를 마련(건축법 개정, '15.8.11)하고, 무허가 축사 농가와 계약한 계열화 업체에 대한 3년간 벌칙 유예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의 핵심이라 지적되었던 축사와 축사간 연결, 축사 처마(비가림시설) 확장,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건폐율 제외 등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통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15.9.9~10.19)를 마쳤다.

농축산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무허가축사 개선 추진상황 점검 및 추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 · 군 축산부서 및 (재)축산환경관리원(070-4289-2315), 농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17, 2330)로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무허가 축사 개선 주요내용】

■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 개선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폐율을 60%까지 확대하여 조례로 운영할 수 있으나, 일부 지자체 미제정 또는 하향 설정(20~50%)

(개선) '15. 10월 현재, 133개 지자체에서 건폐율 60%로 확대(109개소, '12.9월)

■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건축법 시행령 : '13.5.31, '15.4.27)

(현행) 가설건축물 재질은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에 한해 허용

(개선) 가설건축물 재질에 합성수지(일명 썬라이트), 합성강판 1/2이하 사용, 가축분뇨시설 및 가축양육실 · 운동장을 가설건축물에 포함

■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15.3.24)

(현행) 육계 · 오리의 경우 흙바닥에 사육하고 있어 축사로 인정 되지 않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

(개선) 축사 바닥면부터 30㎝² 이상 비닐 등 방수재를 깔고, 10㎝² 이상 왕겨 또는 톱밥 등을 깔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

■ 운동장 적용 확대

(가축분뇨법 시행령 '15.3.24)

(현행) 젖소에 한하여 운동장 허용

(개선) 젖소 뿐만 아니라 한 · 육우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축종으로 확대

■ 축사 거리제한 재설정(권고안 통보 '15.3.31)

(현행)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환경부 권고안*에 근거하여 거리제한

(개선) 환경부 · 농식품부 공동 연구용역('14.6~'15.1월) 결과에 따라 권고안을 축종별 · 규모별로 재 설정

* 한 · 육우 100m, → 50m(400마리 미만), 70m(400마리 이상), 돼지 500m → 400m(1천마리 미만), 700m(1천~3천마리), 1,000m(3천마리 이상)

■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 (가축분뇨법 '14.3.24)

(현행)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신 · 증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축사거리제한으로 인해 인 · 허가 불가

(개선) '축사거리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간('15.3.25~'18.3.24) 유예함으로써 가축사육 제한구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능

■ 무허가 축사에 가축사육을 위탁한 축산계열화업체 처벌 유예

불법 축사에 가축 위탁사육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처벌할 수 있는 벌칙적용을 3~4년간 유예(법 개정중-환노위 상임위 통과, '15.6.16)

■ 의무적으로 설치한 가축방역시설(소독시설)은 건폐율 산정 시 제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가축사육시설('15.4.27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제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2호 다목, 제3호 카목)

■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 (건축법 '15.8.11)

위반내용에 따라 적정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건축법 제80조)

*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 이행강제금 경감 계획(현 50% → 40% 이내)

축사 등 농업용 시설(500㎡ 이하)의 경우 1/5감경, 그 외 위반동기, 범위, 시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감경(건축법 제80조의2 개정)

■ 축사차양, 지붕연결 부위,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건축면적 제외

축사 차양 3m까지(기 반영), 축사간 연결부위 상부 폭 6m이내에서 건축면적 제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

가축분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13.2.20일 이전)에 대해 건축면적 제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 임야(산지)에 설치된 퇴비사, 축사 신고 및 허가

임야(산지)에 설치된 퇴비사, 축사 등 무허가 건축물은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하여 적법화 추진

건축 신고(허가) · 변경신청 시 '산지전용협의(변경협의)요청서 및 '복구의무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제출

▶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2015. 11. 11]

축사바닥 비닐 깔고 왕겨 · 톱밥 10cm 이상 두께 도포 시 육계 · 오리 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

관계부처, 무허가 축사 개선 위한 개정 가축분뇨법 발표

육계 · 오리축사에 대해 일정사항 준수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된다. 지난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합동으로 만든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 요령'을 고시하고 육계 · 오리축사에 대해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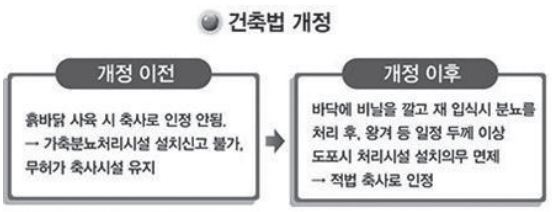

세부실시 요령에 따르면 육계 · 오리축사는 바닥에 비닐을 깔고 재입식시 분뇨를 처리한 후 왕겨 등 일정 두께 이상 도포 시 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보통 육계 · 오리의 경우 흙바닥에 사육되고 있어 축사로 인정되지 않아 가축분뇨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못한 축사가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

가축분뇨법 제 12조, 시행령 제9조제4호에 따르면 육계오리농장의 가출분뇨처리시설 면제 조건은 ▲배출시설의 지하에 분뇨 및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 면적부터 30cm 이상 아래에 비닐 등의 방수재를 깔 것 ▲배출시설의 바닥면부터 10cm 이상의 두께로 왕겨 또는 톱밥 등을 고르게 깔 것 ▲육계 · 오리를 출하할 때마다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것.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생활악취 또는 질병 발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발생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육계 · 오리 출하 시 발생된 분뇨는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자,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퇴비 · 액비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의 퇴비 · 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경작농가에 제공이 가능하다. 단, 1일 최대 300kg 미만 또는 1개월 최대 1톤 미만을 위탁할 수 있다.

한국오리협회 김병은 회장은 "지금까지 미신고 오리축사가 다수 존재했지만 이번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적법화 된 축사로 전환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2015. 11. 18.]]

경기도 "AI 집중발생 겨울철 … 오리사육 휴식제 도입하자"

경기도가 AI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겨울철에 오리 사육을 일시 중단시키는 '사육 휴식제'를 도입하는 등의 근본적인 방역 대책을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이 대책을 제도화할 경우 겨울철 골칫거리 중 하나인 AI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사육휴식제가 도입되면 10억 원의 예

산을 들여 안성지역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서상교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11월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새도래지 주변 오리농가에 12~2월 동안 오리생산을 금지하는 대신 생계비를 보상하는 지침을 만들어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 오리 사육 휴식제 도입 등을 통해 AI 발생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다.

경기도가 정부에 제시한 대책은 AI특별방역지구 지역 내에서 가금류 사육 농가의 사육을 제한 하고 오리농가 사육휴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사육제한은 3차례 이상 AI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 삼진아웃제도를 적용해 닭, 오리 등 가금류 사육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사육 휴식제는 AI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매년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오리 사육을 일시 중단시키고, 대신 월 250만원씩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방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지역의 경우 철새 도래지인 안성천, 청미천 인근 오리농가에서 주로 AI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농가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육 휴식제를 도입하면 발생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당초 12월부터 안성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현행 법상 사육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이라도 법이 개정되면 안성지역에서 20~30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오완석(새정치민주연합 · 수원9)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AI가 매년 같은 시기에 안성 오리농가에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오리사육휴식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또 사업의 결과가 좋을 경우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중부일보 양진영 기자 [2015. 11. 19]

"대책 없는 FTA … 식량주권 지킬 수 없다"
축단협, 국회 앞서 실질적 대책 촉구 기자회견

"FTA로 인한 피해 대책을 실효성 있게 실질적으로 수립하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를 위시한 농민단체들이 그동안 농축산인 생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11월 19일부터 축산인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천막농성에 앞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 · 중, 한 · 베트남, 한 · 뉴질랜드 FTA 실

질대책 수립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축산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병규 축단협회장, 김진필 한농연회장, 손정렬 낙농육우협회장, 오세을 양계협회장, 정병학 육계협회장, 김병은 오리협회장, 김옥경 수의사회장, 김명규 축산물처리협회장, 황엽 한우협회 전무, 문정진 축단협 간사 등이 참석해 관철 의지를 불태웠다.

이들은 그동안 한 · 중, 한 · 베트남, 한 · 뉴질랜드 FTA 국회비준에 앞서 실효성 있는 농축산업 피해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나 실질적인 대책은 전혀 논의되거나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여당이 한 · 중 FTA 비준 동의안을 11월 26일까지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밀어붙이기식 입장을 밝히고 있어 농축산인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농성에 돌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동안 350만 농축산인 생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모든 농업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 ▲김영란법 금품대상 농축산물 제외 ▲중장기 농업인력육성대책 마련 ▲살처분 보상금 전액지급 ▲조세 방식의 실효성 있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우유수급 안정대책 수립 등 충분한 예산수립이 전제되는 실효성 있는 농축산업 피해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해 왔다. 그러나 이런 절박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침내 천막농성에 돌입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농축산단체장은 국회 앞에서 피를 토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농성에 돌입한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농축산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진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한 · 중FTA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대책이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 농업 현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축산신문 이일호 · 김은희 기자 [2015. 11. 20]